

서울복지재단(가칭) 설립추진보고

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도래와 복지개념의 보편화 현상 등에 의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, 행정기관별·시설별 개별적 지원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및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「서울복지재단」(가칭) 설립을 추진

1. 서울시 복지행정 여건

□ 복지업무 현황

- 인 력 : 1,038명(시 75, 구 963)
- ※ 전체 사회복지직 795명(시 2, 구 100, 동 693)
- ※ 시·구 복지관련 담당공무원 현황

구 분	계	시	구	비고
계	1,038	75	963	
시설관련	73	13	60	자치구평균2.4명
일반복지	965	62	903	

- 예 산 : 1조4,693억원 (시 예산의 11.6%)
- 복지시설 : 480개소 (사회복지, 노인, 장애인시설)

□ 복지업무 추세

- 출산율 저하,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도래, 핵가족화, 맞벌이 부부의 보편화 등에 의한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및 복지환경의 급격한 확장
 - 장애유형별 서비스 다양화 및 노인복지 등에 대한 관심·비중 증대
 - 복지부문 예산도 최근 6년간 약 3배 증가
 - 1997년 5,031억원(시예산의 5.2%) ⇒ 2003년 14,693억원(시 예산의 11.6%)
 - 시가 지원·관리·감독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현재 480개소에 이르는 등 향후 지속적 확충 예상
 - 1997년 184개소 ⇒ 2003년도 480개소 ⇒ 2006년 726개소

2. 복지서비스 업무의 변화(개선) 필요성

□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심화

- 종합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필요시 개별적으로 우선 시행하다보니 시대 상황이나 여건에 맞지 않아 제도적인 불균형, 불합리 발생
- 기능담당 부서별(사회, 노인복지, 장애인 등)로 유사업무 중복처리 및 시설 유형별 기준·지침 상이

□ 복지환경 급변에 따른 대응력 부족

- 공조체에 의한 지원·관리 체계의 한계
 -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저하, 전문적 지도·감독 미흡
 -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한 프로그램 개발,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적 지원 기능 미약
- 복지시설 관리 업무의 투명성 등 부족
 - 보조금 집행내역의 투명성 부족
 -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 심사과정의 투명성 부족

□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(복지여성국)와는 별도의 전문적 조직형태(복지재단)가 필요

- 공무원은 정책수립 및 방향설정, 법령정비 등을 담당하고
- 전문조직은 복지서비스의 분석, 프로그램 모델제시·개발, 평가, 복지기관컨설팅, 복지 인

재 양성,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적 지원 분야를 수행함이 보다 효과적

3. 재단설립 관련 주요우려사항 및 해소방안

분야별	우려사항	해소방안
재단성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단이 시의 산하기관화로 또 하나의 감독기관이 신설되어 '옥상옥'의 구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의 업무영역, 기능조정, 중첩 부문 최소화 • 재단에 독자적 권한부여로 재단이 전문가집단으로 위상확립
인사구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무원의 자리 마련처로 전락하여 전문성 확보 곤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표이사는 복지분야 경륜과 덕망있는 전문가 초빙 • 재단직원은 전문성을 가진 자를 공개채용 원칙, 단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초기에 최소 공무원과건
법령·지침 정비 부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실한 법령 및 업무지침 정비가 우선이고 복지재단 설립은 차선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종 업무처리 정비지침 마련하기 위해서도 재단설립 시급→불합리한 법령은 중앙부처 협의·협력 통해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노력
재단설립소요예산 복지부분 투입 및 종사자 처우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단설립 예산을 부족한 복지사업에 투입하고 열악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충당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의 복지시설 연간 총예산의 1.2%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 하고,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사업등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한다면 예산 낭비요인으로는 볼 수 없음 • 재단설립은 현행 복지시스템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변화작업 일환이므로 추가 필요한 복지부분 소요예산은 별도 차원에서 확보

4. 재단설립 개요 및 운영방안

재단설립 개요

- 설립형태 : 재단법인(민법 32조의 비영리법인)
- 조 직 : 1사무국, 1실, 3부, 1검사역 등 30명 내외
※ 이사진은 10명 내외로 구성
- 기본재산 : 1백만원 (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의 관행적 규모)
- 출 연 금 : 시가 매년 일정액의 출연금을 교부하여 운영
- 설립시기 : 2003년중 (예정)
- 주무관청 : 보건복지부

주요기능

- 복지서비스의 수준향상 및 선진화 기능
 -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평가
 - 복지프로그램 개발·보급
 - 복지시설간 연계·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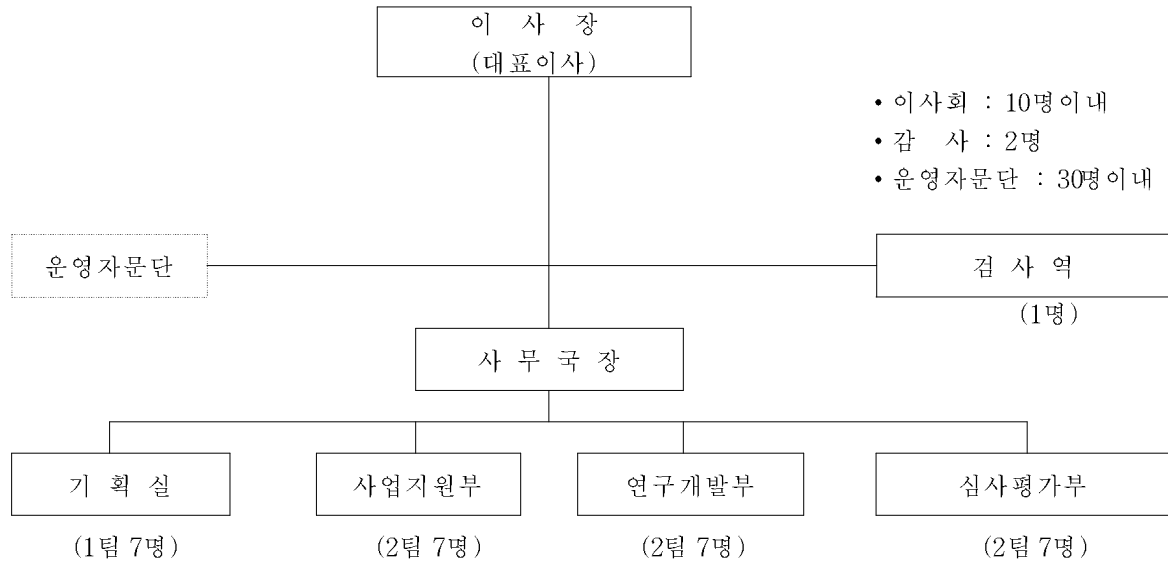
-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
- 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상담·자문서비스 등이 있음 .
- 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능
 -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, 교부액 심사
 -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관련 심의 지원
 - 복지시설 회계절차 개선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개발·보급

□ 운영방안

- 적용대상은 우선 시립시설을 원칙으로 하되, 업무 성격에 따라 구립·사립도 포함
 - 시립시설 : 29개소(종합사회복지관1, 노인시설20, 장애인복지관8)
 - 수탁자 심사, 회계·복지프로그램개발 등은 희망시 구립, 사립 포함
 - 보조금 관리업무는 구립·사립도 포함
- 업무수행 분야는 프로그램개발, 복지시설 평가 등 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업무와 함께 보조금 교부 기준마련, 회계절차 정립, 민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도 병행
 -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업무부터 시행하고, 향후 법령개정(건의) 등을 통해 업무 영역 확대
- 재단운영에 책임운영 체제도입, 예산·인력낭비 요인제거
 - 운영비 : 2,025백만원(인건비 포함)
 - 사업비 : 1,481백만원

5. 『복지재단』 조직 및 인력 구성(안)

□ 조 직 - 1대표이사, 1국, 1실, 3부, 1검사역



- 이사회 : 10명 이내
- 감 사 : 2명
- 운영자문단 : 30명 이내

□ 인 력 - 31명

구 분	계	이사장 (대표이사)	사무국장	부 장 (2급)	팀 장 (3급)	대 리 (4급)	사 원 (5급)	기능직
계	31	1	1	5	7	8	7	2
이사장, 사무국장	2	1	1					
기 획 실	7			1	1	2	1	2

구 분	계	이사장 (대표이사)	사무국장	부 장 (2급)	팀 장 (3급)	대 리 (4급)	사 원 (5급)	기능직
사업지원부	7			1	2	2	2	
연구개발부	7			1	2	2	2	
심사평가부	7			1	2	2	2	
검 사 역	1			1				

복지여성국 주요현안업무보고

1. 여성발전센터 경쟁력 강화방안

우리시 5개 권역별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 특화함으로써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함

[1] 여성발전센터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남 부	중 부	북 부	서 부	동 부
운영형태	시 직영	시 직영	시 직영	민간위탁 (사)대한어머니회 서울시연합회	민간위탁 (재)서울여성
교육인원	5,115명	5,056명	5,610명	4,255명	5,906명
세출예산	2,010,107	1,482,126	1,599,339	1,250,160	1,769,760
세입예산	227,373	245,081	291,274	542,822	894,612

센터별 운영실적

(’03. 6월기준)

구 분	계	남 부	중 부	북 부	서 부	동 부	
① 과정 운영 (과정수, %)	기술교육	240(61%)	35(60%)	64(76%)	47(51%)	39(56%)	55(63%)
	생활문화교육	149(39%)	23(40%)	20(24%)	45(49%)	30(44%)	31(37%)
② 저소득자 교육등록현황(명)	349	75	92	72	51	59	
③ 실직여성·장 애인 등록현황(명)	실직여성	52	18	10	4	5	15
	장 애 인	18	-	5	1	2	10